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2018. 10. 31 내규 제36호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시민참여 경영체제 확립과 고객만족 경영활동 전개를 위한 ‘시민참여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예산제”란 공단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시행을 말한다.
2. “외부 감사기능”이란 계약, 공모, 자문회의, 감사, 인권 등 경영 투명성 제고에 관한 임무를 말한다.
3. “공모심사”란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와 관련된 심사 진행을 말한다.
4. “심사위원”이란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와 관련된 심사를 진행하는 자로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시민위원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며, 전문위원은 그 외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한다.
5. “시민참여위원회”란 연말 개최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총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각 사업장의 고객서비스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이용에 관한 의견 제시, 개선과정,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예산제, 외부 감사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시민 및 전문위원, 참여를 지원

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 및 이해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간 활동결과를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및 공단의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포함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되, 공단 운영여건에 따라 소집 횟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④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계약, 공모, 자문회의, 감사 등에 관하여 연중 상시 활동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⑦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연말 총회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안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별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결과 통보 관련 업무
2. 위원회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
3. 연간 위원회 활동 계획수립 및 관리
4. 기타 위원회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공단 각 사업장에 공유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순서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계약, 공모, 인권 등 외부 감사기능 및 공모심사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의거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금액	비 고
참석수당	참석 1회	50,000원	-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 각 수당은 개별지급 함
심사수당	심사 1회	50,000원	
입회활동 수당	입회 1회	100,000원	

※ 제2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임 무 명:

본인은 상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업무내용과 하기 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임기기간 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상에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